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6. 26 동두천시장이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 7. 1
- 다. 상정일자 : 제12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조문중 현실에 맞지않는 조문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맞추어 정비함.

- 나. 주요골자

- 기간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연장하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함.
-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부를 심의하는 기간 “20일이내”를 “7일이내”로 정하여 행정정보공개 가부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후 처리기간인 15일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연장토록 하므로써 연장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부를 심의하는 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 정하므로써 청구인의 편의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